#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22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백혜련 • 이병진 • 김준혁

이기헌 · 김한규 · 정동영

오세희 • 문진석 • 박성준

허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

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 법률 제 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검사의 공소제기 시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사"를 "검사, 변호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공소제기 시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 25조의2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 동학대범죄 사건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25조의2(검사의 공소제기 시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검사		
	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		
	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공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아동		
	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		
	원에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	대한 보호명령) ①		
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			
인, <u>변호사</u> , 시·도지사 또는	<u>검사, 변호사</u>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			
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			
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